



技術士란 무엇인가?

〈技術士法 立法推進促求 弘報를 爲하여〉

A real definitions of "GISUOLSA" (Professional Engineer) in Korea.

金 响 根*

Kim, Suen Guen

主要內容目次

1. 머리말
 2. 舊技術士法の 발자취(沿革)와 再立法의 必要性
 - 2-1. 法制化의 必要性
 - 2-2. 廢法된 舊技術士法の 줄거리
 - 2-3. 技術士法の 再立法 必要性
 3. 西歐의 技術士(P.E. 或은 C.E.)制度
 - 3-1. 西歐 技術士制度의 要約
 - 3-2. 美國
 - 3-3. 英國
 - 3-4. 캐나다
 - 3-5. 佛蘭西
 - 3-6. 日本
 - 3-7. 뉴우질랜드
 - 3-8. 남아프리카
 4. 技術士의 社會的 役割
 - 4-1. 日本 技術士의 社會的 役割
 - 4-2. 法的 授任權을 갖는 西歐 技術士의 役割
 5. 先進國의 P.E. 或은 C.E.(Chartered Engineer)가 갖는 法的 授任權(Fiduciary Relations)의 本義
 6. 기じゅつし(Gijutsushi)라고 하는 日本의 最新技術士法の 줄거리
 7. (新)技術士法 立法案의 趣旨와 骨子
 8. 現行 實定法인 技術用役育成法과 建設技術管理法 및 國家技術資格法等의 問題點
 9. 主要 參考文獻 및 資料目録(附錄目録리스트만 掲載한다)
- 附錄: -1. 技術士法立法案(科技處公告 第91-29號, 1991. 5. 29)
- 2. 技術士法立法과 關聯된 實定法 目録(添附)
 - 3. 科學技術人의 信條와 技術士倫理要綱
 - 4.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上의 各種 附表資料(添附)
 - 5. 海外 技術士制度에 關한 資料目録(添附)
 - 6. 勞動部의 回信公文寫本(國家技術資格法에 是 高級技術者가 없다는 要旨)
 - 7. 電氣通信技術士 專門分科委員會의 行政訴訟 要約資料 一式(添附)
 - 8. FIDIC(國際) 土木工事 一般條件書中 第67條(英韓文對譯)(添附)
 - 9. 行政電算網(第1次 및 第2次) 資料

1. 머리말

技術士란 무엇인가? 아직도 生疎한 느낌을 주는 이 말은 法定用語로 된지도 이미 約 30年 가까이 되었고 識者中에서도 辯護士, 稅務士, 會計士 等에는 익숙하여 있지만 이 낱말에 對하여서는 全然 모르고 있는 듯한 印象이 매우 높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政治의 貧困, 政府施策의 未洽未備와 弘報 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매스컴에도 제대로 便乘하지 못하고 있는 現實 때문이다.

이것은 端的으로 말해서 法令體系의 整備補完을 必要로 했으나, 行政當局이 지금까지 輩出된 技術士(數 6,872人(1991. 12. 30. 現在))의 怨聲, 民意, 請願을 無視, 輕視, 等閑視 等等に 이르러 馬耳東風, 牛耳讀經 等の 聽覺, 眼目

* 港灣 및 海岸技術士, 韓進開發公社 技術顧問, 技術士法制定推進特別委員會幹事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短命하기로 이름난 科技處에 金鎮炫 長官님이 就任하면서 부터 우리 技術士에게 希望의 烽火를 불붙혀 주기 始作하여 1991年 5月 29日, 드디어 科技處公告 第 91-29號로 “技術士法案”이 立法豫告 되었고, 92年 1月에는 法制處에 移送되어 完全한 立法節次의 첫 段階를 밟기 始作 하였다.

바라건데 92年 上半期에 모든 節次를 거친 다음에 立法制定公布되기를 苦待한다. 그러면 要約해서 技術士란 말이 東洋의 漢字文化圈에서 태어난 經緯를 살펴보기로 한다.

西歐文明을 模倣한 經濟大國인 日本이 西歐의 專門職(業) 技術者인 Professional Engineer(P.E.)를 본딴 것으로서 1957年(法律 第 124號)에 처음으로 『技術士法』¹⁾(全文 第 38條와 附則 第 2條로 構成)을 制定公布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當時 土木界의 重鎮元老 某氏(作故)가 5. 16 以後 이것을 그대로 模倣하여 法制上 未洽·未備한 點이 있는줄도 잘 모르고 거의 日本法 그대로 立法하여 韓國에서도 技術士法이 制定公布(法律 第 1442號, 第 2次 改正後 1976年 12月 31日 技術士法廢止法律(法律 第 2994號)로 廢法²⁾되었다.)하기에 이르렀다. 技術士法 制定當時로서는 建設部門(土木·建築·機械에 限한)의 法定技術者의 用語가 建設業法(1958年 3月 11日 制定公布, 法律 第 477號)에 依한 “建設技術者”(甲種·乙種·丙種)라는 것이 있었을 뿐 이었다. 卽, 韓國과 日本 만이 西歐의 技術士制度和 매우 恰似한 것이 있게 되었고, 臺灣이나 經濟開放化 德澤에 輸出黑字로 跳躍한 社會主義 中國도 아직 없는 實情이고, 中國에서 쓰고 있는 “工程師”라 함은 工事技術者를 意味하고 있다는 것을 添言해 둔다.

돌이켜 보건데 乙巳條約으로 舊韓國이 日本의 植民地로 合併(吸收)되었던 것처럼 1973年 1月 31日 制定公布된 國家技術資格法에 吸收·統合되어 技術士는 母法을 喪失하고, 爲政者의 短見·立法調査未洽 등으로 因해 지금 現在도 地球를 돌고 있는 宇宙船의 迷兒꼴과 같은 孤兒(母法이 없으므로)出身 技術士로 轉落하고 말았다.

別添과 같이 科技處 立法豫告案(附錄-1 要參照)은 技術士의 最小限度 措置로 法的 權利와 社會的 地位, 活用策 등이 條文化 되어 있다.

이것은 實定法上 政府 各 部處에 關聯된 法規의 테두리內에서 立法推進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技術士에게 滿足하고 또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文化 立法이 아니라는 것을 明記해둔다. 卽, 아직도 우리 社會는 民主的·法的·社會的 基盤이 造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 舊技術士法の 발자취(沿革)와 再立法의 必要性

2-1. 法制化의 必要性

8·15 光復後, 美軍政을 거쳐서 大韓民國이 樹立된후 얼마 못가서 6·25 動亂이 勃發되어 國土의 全般的인 産業 및 關聯施設이 거의 잿더미로 變하여 이것을 再建하는데 貧困한 國家 財政과 民族資本이 거의 없는 荒蕪地에서 先進 西歐 各國의 援助資金 및 物資(機械類 包含)가 全國土의 産業施設 再建復舊, 社會間接資本施設投資, 國家基幹産業(發電·鐵鋼·肥料·시멘트 등)의 構築 등 其他에 所要되는데 充當키 爲해 UNKRA(우크라) 援助資金³⁾(裝備類 包含), ICA 經濟援助資金, IECOK 會員(西歐 先進 5個國으로 構成된) 經濟協力資金 등 其他 數

1) 1957年 制定後 1967年, 1983年까지 3次에 걸쳐 改正한바 있음.

2) 國家技術資格法(1973年 12月 31日 制定公布, 法律 第 2672號)에 吸收·統合되므로 因한다.

3) 6·25 釜山 避難時節時 再建復舊用 첫 援助資金 이었다.

多한 經援을 始作으로 IDA, AID, ADB 等の 援助, IBRD 財政借款等이 瀑布水 처럼 쏟아져 들어와 各種 分野에 對한 建設役軍(科學者·技術者·經營者·勤勞者 等 社會全般의 關聯人力을 內包한 것)의 活性化가 社會的 脚光을 받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1964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始作으로 國家가 科學技術人力의 培養과 祖國의 近代化(經濟) 建設에 根幹이 되는 高級科學技術人力의 活用이 더욱더 積極的으로 擴大·持續되어 國家建設에 이바지한 것은 歷史的 既定事實로서 政府施策과 國家的 要求에 副應하는 人力開發의 必要性이 擡頭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西歐 先進外國 및 가까운 日本에서 新規開發 및 復舊再建事業上 必要한 妥當性調査, 事業의 企劃, 調査, 設計, 事業管理, 施工管理 等⁴⁾을 必要로 하는 技術導入이 漸增하면서 늦게나마 技術士制度의 立法必要性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때까지 法的 技術資格으로는 建設業法上의 “建設技術者”, 測量法(1964. 12. 31. 法律 第 938 號로 制定公布後 1986. 12. 31. 法律 第 3898 號로 5次 改正됨)에 依한 “測量技術者”(測量士, 지금은 測地技士 1級으로 呼稱變更 되었음), 遞信部의 各種 “通信士”, 商工部의 “電氣主任技術者”(電氣工作物規定上의 第1種 및 第2種 免許) 等 其他가 있었을 뿐이고, 이것은 一般的으로 各種 建設工事의 施工中心 이었으며, 엔지니어링서비스(Engineering Service)와 工事施工(Construction)을 包括하는 듯한 일을 해 왔었으나, 現技術士業務의 獨立성과 엔지니어링業務는 先進西歐 처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2. 廢法된 舊技術士法の 줄거리

全文 38條와 附則 2條로 構成되어 1963年

11月 11日 法律 第1442號로 制定公布되었으나 그간 1963年 12月 16日과 1967年 3月30日에 걸쳐서 第2次의 法改正을 經驗하다가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公布(1973年 12月 31日, 法律 第 2672 號)로서 吸收統合되고 말았다.

이 法의 特徵으로는 첫째로,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單一法으로 되어 있었으나 日本이 最初(1957年)로 만든 技術士法の 立法上 未備·未洽한 點을 長時間에 걸쳐 審議를 하지않고 立法化 한 것은 이미 作故한 土木界의 先輩님들의 立法上 過誤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크게 指摘되는 것은 當時의 時代的 要請⁵⁾에만 反映하는 듯한 것으로서 舊法을 引用하던데,

『第23條(技術士의 活用) ① 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中 專門인 技術을 必要로 하는 業務를 指定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技術士의 活用을 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技術士를 活用하지 못할 境遇에는 科學技術處長官에게 그 事由를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67. 3. 30. 法律 第 1950 號)』

위와같은 法條文은 約 5~6年 앞을 豫見치 못하는 立法上 過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卽, 技術士活用上 當時 民族資本이 거의 없었던 技術士業務를 專門으로하는 用役業體 育成策에 關한 母法上의 法條文化의 單 한 句節이 없었기에 西歐와 같은 法的授任權과 같은 것은 꿈도 꾸지못하고 오늘날 技術士에게 母法을 喪失케하고 迷兒와 같은 存在로서 適者가 庶子視當하는(行政主管當局에 依해) 끌로서 法的受難을 받게 된 立法上의 一太過誤를 歷史的 記錄으로 남기게 된 不運의 始作이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法律 第2474號)의 胎動을 自招케한 直接 原因이 된 것이었다.

4) 技術士法立法案 第2條(定義)와 같은 業務를 말한다.

5) 經濟開發5個年計劃 參與와 外資導入事業에 重要하게 되다.

先進 美英國이나 經濟大國이 된 日本 같은 나라에도 勿論 우리나라와 달리 格調 높은 法的·社會的·經濟的基盤과 環境要因이 있기는 하지만 技術士法 하나만으로 아무 탈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 嚴然한 現實(法的)을 直視하고 悟覺的(Perceive and discern) 思考와 感覺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期待 한다.

2-3. 技術士法の 再立法 必要性

別添된 表-1은 技術士의 法的受難과 技術上 人權喪失에 關한 年代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舊)技術士法이 1963年 11月 11日 制定公布되어 技術士가 活性化 되어가는듯 하였으나, 維新時代의 遺物인듯한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年 12月 31日 制定公布되고 이어서 1974年 7月 1日 施行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法的受難을 받아오고 있다. 卽, 舊技術士法과 國家技術資格法에서 法定條文化된 語句는 目的과 定義에서 對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舊技術士法の 目的과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士에 對한 資格을 定하고 그 業務의 適正을 圖謀함으로써 科學技術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等의 專門的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要하는 事項에 關하여 이 法에 依한 資格을 얻은 者를 말한다.

위의 2個 法條文은 1957年에 制定公布된 日本 技術士法을 그대로 模倣立法한 것이고, 日本은 또 西歐中 美國의 某洲 技術士法을 그대로 模倣한 것이다. 現立法案은 이보다 더 仔細하고 具體化發展된 語句로 條文化 되어 있다. (要參照 附錄-1)

國家技術資格法の 目的과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效率化 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 寄與를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 이 法에서 “技術資格”이라 함은 產業과 關聯이 있는 技術分野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士, 技能長 等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 (1983. 12. 20. 本項改正)

② ----- (以下 省略함) -----

卽, 國家技術資格法이 制定公布施行(1974. 7. 1. 부터)됨으로서 舊技術士法은 吸收統合되어 1976年 12月 31日 廢法될 때 까지 30個月間 立法上의 잘못된 問題點(違憲上)을 提起한 일 이 없었던 것은 技術士가 本然의 保有技術에만 專念한 까닭도 있었겠지만 立法常識에 未洽했던 것이 그중 큰 原因이라 할 수 있겠고, 關係當局에 請願한 일도 全然 없었던 것이다.

이 法中 여러가지 違憲條文이 있지만 한가지 만 指摘코자 한다.

舊技術士法の 定義에는 있었던 技術士의 法定定義가 完全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既存實定法中 例示한 表-2와 같이 資格을 갖게하고 있는 法律中에서는 定義가 條文化되어 있으므로 이 條項도 違憲(衡平의 原理上)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技術士가 무엇을 하는 者인지 알 수 없는 法律을 實存하게 되므로 技術士의 法的受難과 그 人權은 法的·技術面上 喪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여진다.

法條文의 定義가 없는 實定法은 國家技術資格法이 單 하나의 事例인 것이다.

實定法の 違憲條項으로 構成된 두번째 受難이 技術用役育成法(1973. 2. 5. 制定公布 法律第2474號)⁶⁾이며, 그 法的受難史는 同施行令의 8次에 거친 改正과 1988年 부터는 母法에 根據가 없는 施行令上의 附表에 依한 定義(違法)

6) 全文 17條와 附則 3個條로 構成됨.

表-2. 國內實定法中 各種 資格에 定義화된 法定用語表

No.	法 名	法號	制 定 公 布 日	法 定 資 格 用 語	該 當 法 條 文
1	建築士法	1536	1963. 12. 16	建築士, 建築士補	第1條 第1, 2項
2	國土利用管理法	2408	1972. 12. 30	土地評價士	第29條의 2(土地評價士의 免許)
3	測量法	938	1961. 12. 31	測地技術士, 測地技士 1, 2級	第32條(測量技術者의 免許)
4	建設技術管理法	3934	1987. 10. 24	建設技術者	第2條 第5項
5	建設業法	477	1958. 3. 11 (14次 改正)	建設技術者	第2條 第9項(12次 改正)
	(同施行令 第3條의 別表-2에 建設技術者의 種類가 條文化 되어 있다.)				
6	公認勞務士法	3771	1984. 12. 31	公認勞務士	第3條(資格)
7	公認會計士	1797	1966. 7. 15	公認會計士	第2條(資格)
8	公證人法	723	1961. 9. 23	公證人	第2條(公證人의 定義)
9	關稅法	1976	1967. 11. 29	關稅士	第156條(關稅士의 職務) 및 第157條(關稅士의 資格)
10	辨理士法	864	1961. 12. 23	辨理士	第2條(業務) 및 第3條(資格)
11	辯護士法	3594	1982. 12. 31	辯護士	第3條(職務) 및 第4條(辯護士의 資格)
12	法務士法(司法書士法)	1333	1963. 4. 25	法務士	第4條(資格)
13	稅務士法	712	1961. 9. 9	稅務士	第2條(稅務士의 職務) 및 第3條(稅務士의 資格)
14	藥師法	1491	1963. 12. 13	藥師	第2條 第2項(定義) 및 第3條(資格과 免許)
15	醫療法	2533	1973. 2. 16	醫療人(5種類)	第2條(醫療人) 및 第5-1條(資格과 免許)
16	社會福祉事業法	2191	1970. 1. 1	社會福祉士	第2條(定義) 및 第5條(資格)
17	導船法	3908	1986. 12. 31	導船士	第2條(定義) 및 第4條(免許)
18	海難審判法	2306	1971. 1. 22	海士補佐人	第27條~第29條
19	船舶職員法	3715	1983. 12. 31	船舶職員과 海技士	第2條(定義)
20	不動產仲介法	3676	1983. 12. 30	公認仲介士	第2條(定義)
21	航空法	591	1961. 3. 7	航空從事者	第2條(定義) 및 第23條(資格)
22	原子力法	3549	1982. 4. 1	原子爐操縱責任者	第26條~第28條
23	住宅建設促進法	3998	1987. 12. 4 改正	住宅管理士	第39條의 3(住宅管理士의 業務)
24	電氣工事業法	3294	1980. 12. 24 改正	電氣技術者	第2條 第4項(定義)
25	電氣通信工事業法	3950	1987. 11. 28 改正	通信技術者	第2條 第5項(定義)
26	消防法	3675	1983. 12. 30 改正	消防隊員	第2條 第7項(定義)
27	教育法	4009	1988. 4. 6 改正	教育長	第40條(管掌事務) 및 第73條(敎員의 定義)
28	電波管理法	924	1961. 12. 30	無線從事者	第31條 및 第32條(無線從事者의 資格)

表-3.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改正 및 科技處告示事項

1992. 2. 1. 現在(SGK)

年度別	令第號別	特 定 事 項	備 考
1973. 9. 7	6845	1) 資本金 200~500萬원 以上 2) 建築面積 30~50m ² 以上 3) 土木部門은 一般土木과 水資源分野의 2個部門으로 分類하여 該當 技術士 4人 以上 確保토록함(專門用役業이라 稱하여)	制定公布
1977. 7. 16	8632	1) 第3條(用役業의 種類) 改正: 플랜트·엔지니어링 用役業 (化學工場·一般産業工場·發電所·原子力産業), 綜合建設技術用役業, 專門技術用役業으로 分類함. 2) 附則 第2條(認定技術士) ③ 認定技術士의 認定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科學技術處長官이 定한다. ④ 一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1年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1次 改正 認定技術士 登場始作
1977. 9. 1		科學技術處告示 第18號로 認定技術士新設告示 (附則 第2條 第3項에 依據)	
1978. 9. 18	9161	附則 第4條 第2項과 第3項이 新設되다(認定技術士의 職場移動에 따른 有效化)	第2次 改正: 認定技術士의 活用範圍擴大
1979. 1. 22		科技處告示 第22號로 認定技術士 認定基準 告示 (告示 第18號, 1977. 9. 1. 代替함)	(違憲)
1979. 8. 27	9564	附則 第2項과 附則 第3項의 經過措置의 改正 및 新設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如前히 1981年 12月 31日 까지로함.	第3次 改正
1981. 12. 31	10657	附則 第2條 第4項 改正: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2年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4次 改正
1982. 8. 18	10904	1) 第3條와 第16條 改正 2) 附則 第2條 改正으로 認定技術士의 認定期間은 1984年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5次 改正
1984. 12. 31	11612	1) 附則(5번째) 第3項(技術人力에 關한 經過措置) — 高級技術者의 認定期間을 1987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함. 2) 別表 4의 備考 2에 高級技術者의 定義가 있음 3) 專門技術用役業에 認定技術士 2人 以上 4) 綜合環境技術用役 新設(第3次의 改正)	第6次 改正, 高級技術者用語 쓰기 始作함
1985. 12. 27		科技處告示 第85-12號(科技處告示 第84-4號의 改正) 高級技術者의 經歷審査基準(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別表 4의 備考 2에 根據함)	第7次 改正
1987. 12. 31	12342	附則 ③(技術人力에 關한 經過措置) 高級技術者의 認定期間은 1990年 12月 31日 까지로 延長함.	第8次 改正
1988. 2. 10		科技處告示 第88-5號로 專門技術用役業登錄基準의 技術人力中 技術士代身 高級技術者로 代替認定 範圍	

1989. 1. 10		科技處告示 第88-18號로 電氣通信 1個 分野만을 技術士 2人中 1人을 高級技術者로 代替登錄告示함. 但, 1988年까지 登錄한 既存業體는 1989. 12. 31까지 技術士 2人을 모두 高級技術者로 代替認定함.	
1990. 6. 15	公告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및 施行規則改正令 6個 主要 骨子中, 案 第5條 第1項 別表4 備考2項에 高級技術者라 함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가.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 나. 自然系列의 博士學位 所持者 다.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1級技術士資格을 取得한 後 關聯分野에 10年 以上 勤務한 者 라. 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學校에서 自然系列에 屬하는 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關聯分野에 10年 以上 勤務한 者(科技處長官이 定하는 專門分野의 境遇는 專攻學科를 不문한다)	第9次 改正 ※ 技術士會의 抗議로 (公廳會) 保留되고 다음 新立法案으로 代替公告됨
1991. 5. 18	公告	科技處告示 第91-28號로 技術用役育成法 改正 代身에 “엔지니어링振興法”(全文50條와 附則4條로 構成) 新立法企圖中에 있음	要旨: 登錄義務條件 代身에 申告制로 한다.(法案 第4條)

〈註記〉 違憲對象: 1) 高級技術者의 定義를 別表 4의 備考 2項에서 定義한 點(母法의 根據 없이)

2) 科技處告示 第88-12號로 高級技術者의 經歷審査基準을 定한 것은 國家技術資格法 第5條(類似 資格禁止)에 違反된다.

〈參考事項〉 미국 New Jersey州 技術士法 第41條에는 公共契約時에 技術士活用義務 條項이 있다.

表-4. 電氣通信技術士 年度別 輩出數·登錄業體數·關聯法令告示 一覽表(SGK)

年度別 各種別	64	67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計(單位)				
技術士輩出數	2	1	0	0	1	1	1	4	1	1	1	5	1	2	1	1	2	4	4	14	11	58(人)				
登錄業體數	0	0	1	1	0	0	1	1	2	1	3	0	0	2	1	2	0	2	9	44	15	86(個)				
年度別 關聯法令 및 告示 科技處													(延長)		(延長)	(延長)	(延長)									
													技術 用公 役布 育 成 法			認定 定登 認定期間: 82 11. 技場 30限 術 (令 第10657號) 士 制 施行令改正 7次에 度 이름			高 級 技 術 者 登 場			〈違法(憲)事項〉 1) 科技處告示 第22號: 認定技術士 認定基準(1979. 1. 22) 2) 令 第6次改正으로 高級技術者가 登場함(1984. 12. 31) 3) 科技處告示 第88-5號: 技術士 2人中 1人을 高級技術者로 交替 (1988. 2. 10) 4) 科技處告示 第88-12號: 高級技 術者의 經歷審査基準 5) 科技處告示 第88-18號 6) 科技處告示 第90-13號: 電氣通信 및 情報處理分野 7) 科技處告示 第90-14號				
〈註記〉 1) 技術用役業에 登錄한 技術士 數 15人(92.3.現在) 2) 其他業體, 學界, 公務員, 國營業體, 移民 等 技術士數 但, KTA의 子會社 除外함 43人 3) 技術士 2人 登錄業體 數: 1個社(89년까지 存在함/現在는 없음) 計 58人 4) 技術士 1人과 高級技術者 1人 登錄業體 數: 15個社 5) 技術士 없이 高級技術者 2人만 登錄業體 數: 71個社 總 86個社																										

를 갖고 現在에 이르고 있다. (要參照 表-3)

技術士의 各種 分野中에서 지금까지 法的受難이 가장 甚했던 專門分野가 “電氣通信技術士”로서 事例-1 과 같이 電氣通信專門分科委員會에서 提供된 資料를 갖고 作成한 것이다. (要參照 表-4)

<事例-1> 電氣通信技術士의 問題點 事例

가. 科技處

1) 技術用役業體 登錄違憲 및 行政亂脈

技術士가 없음에도 登錄公告를 함으로써 技術士의 轉職原因을 誘發(提供)하였음.

따라서 技術士 없는 既存業體의 救濟策으로 認定技術士, 高級技術者 制度를 誕生시켰으며 技術者의 需給調節을 均衡있게 運營하지 못한 結果 母法의 根據 없이 立法權이 없는 行政當局이 數 없이 經過措置를 거의 每年 延長하는 惡循環的 違法(憲)上의 法運營을 하고있고 現在도 持續되고 있다.

2) 法令과 告示의 亂發行政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이 1973年 9月 7日 制定公布된 以後 行政當局이 母法의 根據 없이 施行令을 第7次나 改正하다가 科技處告示로 高級技術人力이 不足하여 需給 調整上 不得已하다는 理由만으로 法的 根據를 갖는 技術士 代身에 高級技術者로 代替한다는 行政措置를 1984年 12月 31日 부터 쓰기 始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技術士의 人力管理 未洽事例(金松乙, 朴旻珍 會員 提供資料에 依據함)

總 19個 部門 87個 分野의 專門技術業種中에서 技術士 代身에 經歷者⁷⁾로 모두 代替한 分野는 電氣通信과 情報處理 뿐임. 尖端技術인 電氣通信에 關하여는 繼續 發展하고 있는 技術의 高度化 때문에 數次에 걸쳐서 技術士 活用策을 講究해야 하는 것이 時代的 要請이라고

設問調査에도 應한바 있었으나, 이를 肯定的으로 檢討하지 아니한 結果, 많은 技術士가 現在 經歷者에게 자리를 讓步하고 있기에 技術士 過剩狀態로서 91年度에는 3名이 保有資格과 關係가 없는 他分野로 轉職하게 되어 科學技術立國政策에 逆行하는 現象으로서 既存 技術士를 排斥하는 結果를 招來케 하였다.

現在 58名의 通信技術士中 不過 15名만이 從事하고 있으며, 他分野에 比해서 就業率이 顯著하게 낮으며 繼續 緩和政策이 持續되면 앞으로 技術士業務에서 離脫하는 者가 續出 할 것이다. 分野가 좁고 有無線通信·情報通信 등이 相互 密接한 業務上 關聯때문에 電氣通信 部門의 分野 細分化를 어렵게 하여왔으나, 92年 부터는 情報通信이 새로이 新設되고, 더욱이 90年 14名, 91年 11名 등 大量 合格者 輩出로 因하여 電氣通信分野의 技術士 不足現象은 圓滿히 解決되었음.

特記하여 指摘할 것은 通信分野 年間 受注額 約 150億원에 比하면 技術士 輩出人員數 58名은 적지 않은 것이며, 向後 情報通信分野 追加 新設로 그 數는 더욱 增加 할 것이다.

세번째 法的 受難은 最近에 制定公布된 建設 技術管理法(法律 第3934號, 1987. 10. 24. 制定公布)이라는 것이다. 이 法으로 말미아마 많은 施工監理業體와 施工監理者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法的 模糊性과 未洽·未備點으로 말미아마 向後 建設工事의 現場計測과 情報化施工(Real time System Construction Works)의 未實施로 因해 責任限界를 究明하는 經時的變化의 記錄을 掘鑿工事 같은 境遇에 갖기가 매우 困難하다는 것이다.

이 法의 未洽 및 非合理點이 違憲上 指摘되는 條文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ㄱ) 同法 第2條(定義) 第3號(建設技術用役) 中 施工監理라는 用語는 이 法 第1條(目的)과 相反되는 것이다.

7) 違憲表現인 認定技術士로 始作해서 高級技術者로 呼稱하다가 91年度 부터는 經歷者로 呼稱變更하기 始作 하였음.

『3. “建設技術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遂行하는 建設工事의 計劃·調査·設計(建築士法 第2條 第3號의 規定에 依한 設計를 除外한다). 購買·調達·試驗·施工管理·試運轉·評價·諮問·指導·事業管理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役務를 말한다.』

卽, “建設技術用役”代身に “建設技術管理用役”으로 고쳐야 한다.

ㄴ) 이 法 第2條 第5項(建設技術者)의 定義는 建設業法(1958. 3. 11. 法律 第477號, 最近改正, 1988. 12. 31. 法律 第4075號) 第2條(定義) 第9項과 同一한 表現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建設業法에서 從事하는 者와 建設技術管理法에 依據한 業務從事者와 區別하기 爲해 建設技術管理法에서는 建設技術管理者로 變更하여야 한다.

ㄷ) 이 法 第2條(定義) 第3項(建設技術用役)과 같은 用役業務를 遂行키 爲해 이 法 第20條(建設技術用役)에는 科技處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長과 協議하여야만 施行할 수 있다는 말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設計(建築士法에 依한 設計 除外)等 其他는 技術用役育成法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 이렇게 複雜微妙한 立法制定公布는 嚴然히 違憲對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以外에 이 法 條文에는 建設技術用役의 育成(第20條)만 漠然하게 條文化되어 있지 具體的 施行을 爲한 母法條項이 全然 없다.

ㄹ) 兼職禁止 및 이에 對한 罰則 等이 條文化되어 있지 않아서 한구름 會社內에서는 同一人이 거의 同時에 施工(現場代理人)技術士와 施工監理 擔當者로 遁甲할 수 있는 施行令上의 未洽的 素地가 潛在하여 있다고 본다. 建設業法 第34條(建設技術者 兼職의 禁止)를 援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

고, 더욱이 建設技術者의 定義가 兩法(建設業法과 建設技術管理法)上 同一하게 條文化 하였으므로 法 運營 및 訴訟事件 發生時 法解釋上 難點·矛盾點을 안겨주고 있다.

ㄹ) 先進西歐 諸國은 일찌기 엔지니어⁸⁾ (Engineer)制度下에 施工監理와 技術仲裁는 發注者·施工者(Constructor, 或은 Contactor). 엔지니어의 三角關係로 密接한 關係가 이루어져 왔었고 더욱이 技術仲裁機構가 常設되어 있어서 엔지니어의 法的授任權이 行使케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에 該當하는 法的 根據 및 行政措置도 없다.

建設工事紛爭發生時 調停(建設業法 第32條 第32條의 2~10)에만 그치고 仲裁⁹⁾ (Arbitration)는 할 수 없고, UR 開放과 더불어 建設市場 開放對備上의 法的措置도 取해져야 할 것이며 民主化·先進化·國際化에 對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ㄹ) 이 法의 『第15條(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는 “建設部長官은 建設技術에 關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法 第18條(새로운 建設技術의 保護)에는 技術開發促進法(法律 第2399號, 1972. 12. 28. 制定公布됨) 과의 關係를 明白히 條文化한바 있다.

第18條(새로운 建設技術의 保護) ① 建設部長官은 國內에서 開發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消化·改良된 建設技術에 對하여는 이를 開發 또는 改良한 者(以下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意見을 들은 後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새로운 建設技術(以下 “新技術”이라 한다)로 告示할 수 있다. 다만,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 2의 規定에 依한 建設資

8) 엔지니어는 우리가 呼稱하고 있는 技術者라는 뜻 外에 法的授任權이 있다는 것을 銘記하여야 한다.

9) 言論仲裁, 商事仲裁, 海難審判 等이 있으나 技術仲裁만 國內에 없다.

材와 關聯되는 國產新技術製品에 對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建設部長官은 技術開發者의 保護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新技術을 使用하는 者로 하여금 技術使用料를 支給하게 하는 등 無斷使用을 規制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이를 保護할 수 있다.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工事に 新技術을 于先的으로 適用하게 하는 등 新技術의 使用을 促進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 法 第15條와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法律 第3848號, 1986. 5. 12. 制定公布됨)의 第12條(專門團體의 支援育成),

第12條(專門團體의 支援·育成) ① 逋信部長官은 電算網에 關한 技術開發, 人力養成, 弘報 등을 하는 專門團體를 支援·育成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支援·育成方法 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6條(國家電算網의 開發促進 등) 및 第21條(稅制·金融等의 支援) 등 其他와의 關係를 法條文에 왜 明記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하다.

第16條(國家基幹電算網의 開發促進等) ① 政府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等의 電算網의 構築等 電算化 促進을 爲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바에 따라 必要한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4條의 基本計劃에 依하여 國家基幹電算網의 構築과 發展을 爲하여 推進하는 事業에 電算網事業者를 指定하여 미리 事業을 推進하게 하거나 關聯機器를 一括하여 供給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의 推進과 機器의 供給에 所要된 資金은 政府가 豫算上에 計上하여 一定期間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事業者의 指定節次, 事業의 推進과 機器의 供給方法 및 內容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電算化事業에 參與하는 者가 關聯機關에 對하여 事業推進을 爲한 行政上의 協助要求가 있을 境遇에 關聯機關은 最大限 協助하여야 한다.

第21條(稅制·金融等의 支援) 政府는 情報化社會의 基盤造成을 爲하여 電算網事業者에게 稅制, 金融, 行政, 法制上의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이런 끝이니 政府의 第1次(1987~1991年) 및 第2次¹⁰⁾(1992~1996年) 行政電算網 構築事業에 介入하지도 못한 일인지 알 수 없다.

入) 建設技術管理法改正에 對한 意見照會公文(文書番號 技振30720-153, 1992. 3. 21, 發信者 建設部長官)에 對한 回信案 [다음과 같이 이 法改正基本原則을 提案한다.

建設技術管理法改正 基本原則

㉠ 建設技術의 先進化, 國際化 提高 및 市場開放(U. R) 對備

㉡ 現行 實定法規의 未備·未洽·法體系의 整備促求

㉢ 建設技術人力의 高度·情報化 促求

㉣ 施工監理와 技術仲裁(Technology Arbitration)制度의 確立 및 關聯法規의 改正補完이 時急하다.

따라서 技術仲裁機構 같은 所謂 (社)建設技術仲裁院의 設立根據를 위 法 或은 建設業法上에 條文化되어야 하며, 勿論 이것도 將次 갖게 될 建設技術 및 同業電算網의 한 情報通信網의 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適用法律

(1) 建設技術管理法 第15條(建設技術 情報體制의 構築)

(2)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關한

10) 電算網組織委員會(逋信部)가 '92. 2. 25 發表함(電子新聞 '92. 2. 26. 字)

法律(1986. 5. 12. 法律 第3848號),
第12, 16, 21條等)

○參照行政事項

- (1) 第2次 行政電算網構築事業('92~'96, 總務處)

3. 西歐의 技術士制度

3-1. 西歐 技術士制度의 要約

美國, 英國, 캐나다(加奈陀), 佛蘭西, 獨逸(西), 等 便宜上 5個國에 限해서 要約하면 別添 5와 같다.

3-2. 美 國

<資 格>

- 各州 마다 Professional Engineers Act가 있음.
(1907년에 와이오밍州가 最初로 制定公布함)
-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N.S.P.E)로 各州에 協會가 있다.
- 州法에 依해 年 2回 State Board of Registration에서 試驗 實施함.
- 理工系 4年制 大學 卒業後 EIT(Engineer in Training)試驗(基礎理論) 合格者로서 6年 以上の 實務經驗을 갖고 P.E.(Professional Engineer) 試驗(理論, 實務經驗)에 合格되어 State Board of Registration에 登錄되어야 資格을 取得한다.(註記: 最新 日本技術士法의 技術士補가 이것을 模倣立法한 것이다)
- P.E.가 아닌 者는 P.E. 業務를 할 수 없다.

<關聯團體>

- ACEC(American Consulting Engineer Council)가 FIDIC協會에 加入한 3,750社
- NSPE(1934年 創立), 個人會員 80,000名

(1980年)

○ASEC(土木學會)

<컨설턴트 選定方式>

- 中央政府, 州, 地方公共團體가 다 『네고』方式을 擇하고 있으나, 메릴랜드州만 競爭入札制 임.

<標準契約約款>

- NSPE, ACCE와 ASCE 等 3個 團體 合同으로 標準約款(Standard Form of Agreement between Owner and Engineer for Professional Service)을 作成 使用하고 있다.
- 約款에 關한 紛爭은 A. A. A(美國仲裁協會)의 建設業仲裁規則¹¹⁾에 따른다.

<賠償責任과 保險>

- 1956年에 P.E. 賠償責任保險制度가 導入됨.

<育成策>

法的·社會的 基盤下에서 民間主導로 이루어지고 있고, 海外受注에는 相互間에 協助한다.

3-3. 英 國

世界에서 가장 먼저 技術士制度와 오늘과 恰似한 入札契約方式(1759年)을 發展시킨 元祖國이다.

<資 格>

- Royal Chater(勅許狀)에 依해 資格 附與함.
- 16個의 Chartered Institution中에서 Chartered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ICE)는 會員志願者에게 實務經驗의 小論文 提出을 要求받고 口述試驗 實施로 資格 取得함. 但, 口述試驗前 一定期間 ICE에서 要求하는 冊子에 依한 通信應答을 畢하여야 한다(1945年)
- Council of Engineering Institution(CEI)가 各 CI와 協力해서 定한 大學卒業資格 認定基準에 合格한 者 또는 大學卒業者로서 最低 3年間의 設計, 管理 或은 特別한 研究에

11) 全文對譯인 韓國技術用役協會 發刊 『韓國技術』通卷 第4輯, 페이지 33~67 要 參照

表-5. 西歐先進國 技術士(P.E. 或은 C.E.)制度 要約表(SGK)

國別 對比種目	美 國	英 國	카나다	佛 蘭 西	獨逸(西)	備考
1. 資 格	法制化/P.E. *1技術士補制度 있음	C.E./勅許狀資格	法制化/P.E.	法制化/Ingé nieures Diplomé	法制化/C.E.	
2. 關聯協會	ACEC/NSPE/ASCE 等 여러個 있다.	ACE/BCB/ICE 등이 있다.	ACEC(團體會員)/ CCPE(個人會員)	CICF(個人會員)/ SYNTEC(企業會 員)/ OPQIBI(企業資格 審査機關)	VBI(個人會員)/ VUBI(企業會員)	
3. 컨설턴트 選定方法	評點에 依한 隨意契 約方式	特名隨意契約方式	評價隨意契約方式	大型事業은 入札方式 小規模는 隨意契約方 式	프로포살選定 隨意契約方式	
4. 標準契約約 款 仲裁	3協會合同 標準契約方式 *2A.A.A仲裁機構利 用	世界的으로 活用되고 있는 標準契約方式 있음	있음 있음	있음 未詳/海外契約時있 음	FIDIC樣式을 擇하고 있음 未詳/海外受注契約 時있음	
5. 賠償責任과 保險	世界最高水準으로 發達하여있음	있음	있음	法制化되어 있음	있음	
6. 報酬基準	있음	있음	있음	民間/公共機關別로 있음	있음	
7. 育成策	政府보다 民間主導 로하고 있음	있음	民間主導로 하고 있 음	業務情報支援을 하고 있음	海外情報支援만 있을 뿐이다.	

*1 日本에도 技術士補制度가 있음

*2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美國仲裁協會)

實務經驗을 갖고 CI會員이 되어 CI를 통해
서 專門試驗 合格後 CEI에 登錄을 한 者만
이 Chartered Engineer로서 營業할 수 있
다.

- 一般的으로 獨占業務는 없으나 大規模事業
에 關한 業務는 限定된 資格을 가진 者만이
委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Chartered Engineer위에 上級資格으로 Fel-
low member(40歲 以上)가 있다.

<關聯團體>

- ACE(The Association of CE)가 FIDIC
(1913年 創立)會員으로 되어 있다.
- BCB(British Consultant Bureau)가 1965

年 創立되어 300個 會員社가 있다.

- ICE(土木學會)가 1818年에 創立되었다.

<컨설턴트 選定方法>

- 政府나 民間이나 『네고』方式을 擇함

<標準契約約款>

- ACE는 土木設計, 監理, 土木工事, 建築工事,
設備工事 等の 4種이 있다.
- 契約上의 紛爭은 相互合意된 仲介人 或은
ICE에 仲裁委託 한다.

※ 註記: 世界 各國이 現在 使用中인 FIDIC標
準契約約款은 英國의 ICE의 것을 거의 模
倣하여 制定한 것임(SGK)

<育成策>

- 貿易業者의 情報提供, 在外公館의 支援, 事前調査費의 補助金制度가 있다.
- 世界的인 情報網(電算化)을 갖고 民間主導로 育成支援을 政府가 間接的으로 하고 있다.

3-4. 캐나다(加奈陀)

〈資格〉

- 各州別 Professional Engineers Act(職業法)가 있다.
 - 各州의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11個의 Eng. Ass.)가 認定하지않는 工大卒業者(例: 外國大學 卒業者)에 對해서는 每年 Eng. Ass.이 試驗을 實施 한다.
 - 4年制大學 工學部를 卒業한 者로서 同一企業體內의 P.E.가 指導한 實務經驗을 保有하고 Engineer Association에 登錄한 者
 - 大學工學部 卒業者로서 公務員인 境遇에는 登錄을 하지않고 P.E.의 稱號를 使用해도 罰을 받지 않는다. (實際的으로는 登錄을 한 者가 많음)
 - 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CCPE)와 各州에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가 있다.
 - 設計圖의 作成이나 技術에 關한 證明, 技術指導契約 等 技術에 關한 公式文書에는 Eng. Ass.이 發行하는 P.E.의 Stamp가 必要하다고 規定되고 있다.
各州의 P.E. Act에 依하면 P.E.는 技術職으로서의 資格을 表示하고 있으며 職場과는 無關한 것이다.
 - 엔지니어링의 法律과 倫理의 知識도 必要하다.
 - P.E. 資格取得 以前의 訓練中인 者는 EIT라고 한다.
- #### 〈關聯團體〉
- ACEC(Association of CE of Canada)가 FIDIC會員社(860個社, 1980年)

- CCPE(Canadian Council of P.E.)가 1936年 創立(個人會員 11萬名, 1980年)

〈컨설팅 選定方式〉

- 『네고』方式을 擇하고 있다.

〈標準契約約款〉

- ACES는 標準契約書(Prime Agreement between the Client and the Engineer)를 作成 CCPE와 國家計劃行政官(National Program Administrator)의 承認을 받는다.
- 契約上의 紛爭은 兩當事者에 依해 共同指名된 1人의 仲裁人에 委託한다. 兩者가 1人의 仲裁人 指示에 合意되지 않을 때 이 仲裁人은 特定 裁判所의 判事에 依해 指名된다.

〈賠償責任과 保險〉

- 1969年 부터 付保制度가 確立되었다.

3-5. 佛蘭西

〈資格〉

- 技術이 認定된 大學卒業者로서 Ingénieurs Diplômé라는 國家資格이 附與된다. (全國에 12萬名)
- 1977年 부터 OPQIBI(企業資格審査機關)의 資格制度로서 360個社(1980年)에 附與되고 公共事業의 必須條件으로 法令化 되었다.

〈關聯團體〉

- CICF(Chamber des Ingénieurs Conseils de France)가 FIDIC會員으로 加入 됨
 - SYNTEC(Chamber Syndicale des Societes detudes et de Conseils) 210個 會員社(1980年)
 - OPQIBI(Organisme Professionnel de Qualification des Ingénieurs Conseilet Burewx d'Etudes Techniques du Bâtiment et Infrastructures)資格指定社 360個社(1980年)
- #### 〈컨설팅 選定方法〉
- 公共發注法(Code des Marches Publics)에 依據하여 競爭,指名, 隨意的 3形式으로 大別된다.

〈標準約款契約〉

- 民間은 CICF의 標準約款이 있고 公共에서는 公共發注法에 따라 詳細한 契約모델을 設定하고 있다.

〈賠償責任과 保險〉

- 付保事項은 義務條項으로 되어 있다.
- 民法 第1792條에서는 建設者가 原則的인 責任을 진다.
- 保險法 第2節 第4章(建設工事保險)에 付保制度가 있다.

〈育成策〉

- 海外業務에는 補助金制度가 있다.(海外協力省)

3-6. 日本

〈資格〉

- 技術士法에 依하여 資格 附與 (1957年 制定公布後 1967年과 1983年 等 最近까지 3次 改正)
- 國家試驗 年 1回 科學技術廳이 實施하되 技術士補와 技術士試驗의 2段階로 나누어 있음
- 技術士補의 定義를 技術士가 되기 爲해서 必要한 技能을 修習하기 爲해 登錄을 하고 技術士補의 名稱을 써서 技術用役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技術士를 補助하는 者로 하였다.(第2條 第2項)
- 技術士審議會와 日本技術士會의 制度化 등이 되어 있다.
- 公共事業에 關해서는 建設省은 建設省 登錄規程에 依據 登錄케하고 있다.

〈關聯團體〉

- AJCE(Association of Japanese CE)가 FIDIC會員 加入(37個社, 1981年)
- JCEA(Japan CE Association: 日本技術士會)가 1951年 創立(2,855名 會員加入, 1981年)
- JCCA(Japan Construction Consultants

Association: 建設컨설턴트協會) (1963年 創立, 154個 會員社, 1981年)

〈컨설턴트 選定方法〉

- 隋契, 見積合議隋契, 指名入札의 3大 形式이 있다.

〈標準契約約款〉

- 建設省의 標準約款이 있다.
- 紛爭處理條項이 없다. 卽, 仲裁機構가 없으나 建設省 傘下에 各 地方縣別로 紛爭協議會가 있다.

〈賠償責任과 保險〉

- 建設家의 設計業務와 一部 管理業務 外에는 專門家 賠償責任保險制度가 있다.
- 技術士信用協同組合이 1976年에 結成되었다.

〈育成策〉

- 建設省이 常時 育成에 留意하고 있다.
- 海外 컨설팅活動振興稅制措置(時限立法)가 取해져 있다.
- (日本)運輸事業法에 依해 全日本國鐵(株式會社로 民營化 됨)이 發注하는 모든 技術士業務는 技術士資格證 所持者만이 受注資格이 있도록 法制化 되었다.

3-7. 뉴우질랜드

- Engineers Registration Act가 있음(1924年)
- 試驗制度 없음
- 大學卒業者로서 4年 以上の 實務經驗을 所有하고 Newzeland Institution of Engineers(NZIE)의 會員이 되어 政府에 登錄을 한 者
- Newzeland Institution of Engineers(NZIE)에 義務的으로 加入

3-8. 남아프리카

- Professional Engineers Act가 있음(1968年)
- 試驗制度 없음

○認可된 4年制 以上の 大學卒業者로서 3年 以上の 實務經驗을 가지고 South Afric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ACPE)가 Engineer in Training(EIT)의 資格을 附與한 者中에서 SACPE가 認定한 者
 上述한 諸外國에 和蘭國은 資格에 關한 法制化는 안되어 있지만 Ir(인게니어)¹²⁾ ONRI 會員이 되기 爲해 最小 3年間의 實務經驗을 얻어야만 獨立된 엔지니어(C.E.)로 일 할 수 있고, 西典國 亦是 法制化는 안되어 있기는 하나 大學卒業後 C.E. Firm의 事務所에서 SKIF會員 밑에서 研修를 거쳐서 C.E.가 될 수 있다.

4. 技術士의 社會的 役割

4-1. 日本技術士의 社會的 役割¹³⁾

1) 技術移轉 擔當者의 손(手)

優秀한 技術을 相對的으로 遲刻되어 있는곳 또는 判異한 技術分野에 傳達케 한다고 하는 技術移轉, 더욱이 A라고 하는 技術과 B라고 하는 技術을 融合시켜서 C라고 하는 附加價値가 높은 高度의 應用技術을 創出 生成케하는 技術移轉, 이와같은 技術移轉이 지금 脚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隋伴해서 技術移轉의 擔當者로서의 손이 技術士의 役割에도 크고 많은 期待가 모아지고 있다.

事業經營에 있어서 新分野의 開拓을 策略하거나 舊體質의 改善을 企圖할 때 高度의 技術情報에 對하여 確實하게 그 眼目的 밝기(判斷)와 確實하고 敏腕的(處置)인 行動을 發揮하는 것이 프로의 엔지니어로서의 技術士인 것이다.

2) 必要시 一定期間 有效하게 活用될 수 있는 專門技術者

企業이 新技術. 應用技術을 驅使하므로써 附加價値가 높은 製品을 開發하거나 省力化·自動化(情報化)에 依한 生産面의 合理化에 着手할 때 于先 必要한 것이 經驗이 豊富한 技術者일 것이다. 그러나 現代와 같은 技術自體가 多樣化하고 高度로 專門化 해가면 各 分野의 技術者를 常用해 두거나 그때마다 育成하게 하는 것은 企業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得策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必要時에 一定期間 確實하고 明確한 專門技術者를 雇用하거나 혹은 特定된 業務를 依頼할 수가 있으면 그 메리트(Merit)는 매우 큰 것일 것이다. 技術士는 流動性이 있는 또 한層 그 質이 高度化 된 人才인 것이다.

3) 秘密遵守하고, 信用第一인 公認技術콘설턴트(Consultant)

外部 技術者에 依賴할 때, 예컨데 依賴者인 企業의 秘密을 保全 할 수 있을 것인가? 技術者가 經驗. 實績과 함께 豊富하고 企業이 안고 있는 여러 問題에 對應 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을 兼備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또 그 業務에 對한 報酬는 公正하고 妥當한 것인가? 이와같은 質問이 남게 된다.

技術士는 國家가 技術者로서의 經驗·知識·能力·人物 등을 嚴正하게 체크하는 國家試驗에 合格하고 科學技術廳에 登錄된 者에게 賦與하는 資格이고 또 技術士法에 따라서 守秘義務를 賦課시킨 嚴正中立된(Independent neutral) 技術콘설턴트로서 國家가 認定한 技術者인 것이다.

이와같이 技術士는 安心하여 事業일을 委任할 수 있는 唯一한 公認技術콘설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技術士法, 日本技術士會, 技術士業務倫理要綱)

12) 例컨데, Delft 大學卒業後(5年 以上 課程) Ir 稱號를 받는다.

13) (社)日本技術士會의 技術士要覽中에서 拔萃한 것임.

日本技術士業務의 흐름도

技術士

公共投資機關事業의 調査, 計劃, 設計, 見積, 示方書, 施工管理, 試驗, 検査, 新製品開發計劃立案, 指導, 新素材의 應用研究, 指導, 新技術의 解析, 評價, 新技術, 先行技術의 調査, 分析, 市場調査의 企業分析, 地域計劃, 開發計劃의 立案

發注處 是은 機關(CLIENT)

諸官廳, 特殊法人, 公社, 公園, 地方公共團體, 金融機關, 裁判所, 大學, 各種學校, OECF(海外經濟協力基金), JICA(國際協力事業團), UNDP(日本貿易振興會), ILO(國際勞動事務局), IBRD, AID(世界銀行), ADB(亞細亞開發銀行), 外國政府機關

建設, 製造, 加工工業, 싱크탱크, 研究所, 證券, 商社, 調查會社, 交通, 出版社, 出版, 印刷業, 鐵鋼, 自動車, 家電, 重電, 化學, 造船, 工作機械, 纖維, 窯業, 電子, 通信, 紡績, 紡織, 染色, 製藥, 製粉, 製品, 印刷, 非鐵金屬, 機械工具, 情報處理, 鑛業, 石油, 樹脂, 鐵道, 海運

機械加工, 製紙, 印刷, 金屬製品, 鑄造, 食品, 유리, 精密機械, 金型, 프라스틱, 프레스加工, 縫製, 外食産業, 農園, 山林, 水産, 食品, 文具, 카레라, 雜貨, 裝飾, 印刷, 鑄物, 修理業, 玩具, 塗裝, 設計事務所, 特許事務所, 法律事務所, 病院, 發明家, 個人

業務內容別

建設技術全般에 대한 業務의 轉讓, 業務提議先의 探索轉讓, 企業, 巡迴診斷指導, 싱크탱크의 調査員, 地方産業의 體質改善, 取材, 著述, 講演, 工場設備의 積算, 國際技術協力, 職業訓練, 國有特許의 普及, 轉讓, 라이선싱(Licensing), 技術鑑定

發明, 出願指導, 地震, 防災診斷, 省에너지對策과 指導, 加工, 組立의 自動化計劃, 大氣, 水質, 地盤, 地下水對策, 廢棄物의 處理, 利用計劃, 技術文獻調査, 解析, 技術評論, 實務教育, 人材教育, 能力開發, 新製品의 國產化計劃

컴퓨터(電腦)의 導入計劃, 業務轉換, 製品不良率改善策, 原價低減策, 設備機械의 評價, 選擇, JIS表示工場의 受診, 技術情報 收集, 分析, 企業을 爲한 프로젝트항목의 作成, 圖書管理의 指導, 品質管理의 指導, 管理技術, 內作, 外作의 最適化

技術相談, 技術指導, 아이디어提供, 收益性業種, 事業일은 무엇인가, COST-DOWN의 決定的 是은 무엇인가, 不良率을 어떻게 降어뜨리는가, 開發規模의 程度向上策, 外注對策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컴퓨터는 도용이 되는가, 補助金, 助成金 獲得의 노하우(Know-How)이러한 技術의 發心이 나는에 人材對策, 設備對策, 리스(Rent), 렌탈(Rental)의 活用方法

4-2. 法的授任權을 갖는 西歐(先進國)技術士(P.E. 或은 C.E.)의 役割

〈要約〉

- ① 美英國에서는 엔지니어와 發注者間的 信託關係(Confidential Relation)의 일을 法的으로 授任(授任)關係(Fiduciary Relation)가 成立되어 있다.
- ② 엔지니어는 發注者의 代理人(Agent) 行動을 하는 外에 發注者와 都給者間的 仲裁人(者)(Arbiter) 役割도 遂行한다.
- ③ 엔지니어의 仲裁判斷의 役割은 司法的役割 或은 裁判官的役割(Judicial Function)이라고 하고 엔지니어는 裁判官 처럼 公正하고 公平(Justice and Equity)을 모토(Motto)로 行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先進國의 P.E. 或은 C.E.가 갖는 法的授任權의 本義

前述한 西歐의 技術士制度和 對比 할 때 比喩적으로 적으면 마치 先進國에서 技術導入으로 國産화된 工産品에는 創造的 加工技術을 加味한 韓國型 各種 工産品이 있다시피 우리의 엔지니어도 韓國型技術士¹⁴⁾이고 日本도 所謂 P.E. 아닌 ぎじゅつし(Gijutsushi)라고 翻譯하는 것도 日本型技術士라는 것을 明確히 알아야 한다. 卽, P.E.나 C.E.(Chartered Engineer)와 같은 法的授任權이 없는 까닭에 우리도 “技術士”(Gisoulsa)¹⁵⁾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過去 日帝植民地였던 탓도 있고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韓國의 實定法을 研究하는 데는 必須課程으로 日本의 實定法規나 그 制度를 檢討解析하는 것이 올바른 順序이므로 여기서 技

術士制度 研究에 關聯된 日本의 文獻을 參考로 抄譯하여 紹介한다.

各種 建設工事에서 美·英의 엔지니어(P.E. 或은 C.E.)의 地位가 契約書類¹⁶⁾에 依해 確立되어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그 役割은 어떤 것인지 深度있게 理解하기 爲해 隣近 日本의 都給(請負)制度和 比較해 가면서 以下에 적은 內容이 韓國의 立場과 거의 같다는 것을 實感하시기 바랍니다.

『 日本의 都給契約과 엔지니어(Engineer)

日本에서의 都給契約의 片務性과 그 改善策에 關해서 西川龍三氏는 土木學會誌에서의 講座¹⁷⁾를 通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民法上 都給에 關한 規定, 前述한 建設業에서의 各種 規定에 묶여있음에도 不拘하고 實際로 締結된 都給(請負)契約에는 所謂 말하는 片務性이 엿보인다. 이것은 原來 雙務契約으로 되어야하는 都給契約이 當事者間的 社會經濟的力學 關係와 封建的 思想等에 由來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片務性을 除去하기 爲해 中央建設業審議會에서 作成된 建設工事標準都給(請負)約款契約이 있다.』

發注者(甲)은 金錢을 都給(請負)者(乙)에게 支拂하면서도 甲乙關係는 主從關係(master-servant relations)와 比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歷史的 바탕을 둔 封建思想인 것이다. 甲乙關係는 甲(owner 或은 client)-獨立(independent)-乙(contract or constructor)라고 하는 關係를 保持하는 것이 近代的인 思考方式이다.

그것은 雇用主와 使用人과의 關係는 이제는 主人-下人間의 關係가 아니고 雇用契約上 一對一 同等立場이라는 것이다. (때로는 被雇用者라고도 말할 수 있는 立場에서 생각 할 수도

14) (社)韓國技術士會를 英文表記時 P.E. 라 함은 完譯이 아니다.

15) 곳이 英文表記한다면 正確히는 P.E.나 C.E.에 비슷하지 올바르게 맞는 翻譯은 아니다.

16) 契約書類(西歐方式의)는 最小 8件으로 構成되는 것이 常例이다.

있을 것이다.)

問題는 發注者와 都給者가 어느 程度 이 關係(定立)를 自覺해서 實行에 옮기는가 하는데 있는 것과, 그것을 뒷받침하는(back-up support) 合法的인 契約書類(contract documents)가 있는가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英·美에서는 이 關係를 保持할 수 있도록 標準的인 一般條件書¹⁸⁾(約款)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은 勿論, 韓國에도 規制事項은 아니고 1984년에 用協이 主動者로서 翻譯되어 參考資料로 그치는데 있을 뿐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도 都給契約의 近代化를 爲해 作成된 것이 있고, 이것이 前述한 中央建設審議會(中建審)의 建設工事標準都給契約約款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普及(日本서)되면 韓國에도 그 影響이 波及 될 것이고, 都給契約慣行에 接近한다고 생각 될 것이다. 엔지니어제도 自體에 否定的인 意見을 갖고 있는 限 西歐化 慣行은 至難 할 것이다.

韓國이나 日本의 標準都給(請負)契約約款에는 한가지 問題되는 것은 바로 指摘하려면 엔지니어의 地位(法的身分)가 如前히 確立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標準約款에서 發注者-엔지니어-都給者라고 하는 三者關係가 成立되어 있지 않고, 發注者(甲)와 都給者(乙)라고 하는 關係가 主이고 엔지니어는 監督者라는 呼稱으로 若干 名分上 登場하는것에 不過한 것이다. 이것은 (日本에서) 戰爭前인 1938年(昭和13) 日本土木學會가 制定한 『都給(請負)工事標準契約書』에 있어서 指摘되는 技師¹⁹⁾의 地位와 同一한 것이다. 同調査委員會의 近藤鐵太郎 委員이 當時 恨歎한 것처럼 亦是 『技師의 位置』는 確立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中建審作成 建設工事標準都給(請負)契約約款의 第9條와 第15條는 西川龍三氏의 講座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注文者』(發注者)側 監督의 權限을 明確히 規定한 第9條는 『甲(發注者)는 乙(都給者)의 工事施工에 關해서 自己에 代身하여 監督 或은 指示하는 監督者를 選定할 수가 있고, 監督者는 이 契約書, 圖面 或은 仕様書(示方書)에 定해진 대로 事項의 範圍內에서 다음 各 號의 職務를 施行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各 號라 함은 簡單히 記述하면 a)工事施工時의 立會, 監督, 指示. b)細部設計圖, 原寸(尺)圖 等 檢査, 承諾. c)工專用 資材等의 檢査, 試驗 等の 3項目 이다.

第 15 條는 圖面과 工事現場의 狀態가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 乙은 監督者에 書面으로 通知를 한다. 監督者는 即時 調査를 行하고 乙에 指示를 附與하지 않으면 안된다. ...』

上述한 『監督者』라고 하는 言葉이 마음속에 깊이 걸리는 것이다. 엔지니어(技術士)의 役割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는 英美式의 思考方式으로 보면 『監督者』는 工事施工時의 立會 等인 스펙타(Inspector: 檢査者)의 役割을 하는 것 같기도 하며. 또 設計變更時 等 엔지니어의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겠끔 되어 있다고 上述한 文脈에서 쉽게 推理할 수 있는 까닭이다.

쉽게 말해서 인스펙타라고 하는 것은 一種의 『허수아비(scarecrow)』 같은 것이고 엔지니어라 함은 『칩 엔지니어』(Chief Engineer)격이므로 韓國이나 日本의 標準約款에서 呼稱하는 『監督者』가 兩側의 職能을 遂行하는 義務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英美方式의 인스펙타의 義務는 指摘하건데

17) 日本土木學會誌編輯委員會編 『土木技術者のための 法律講座その3. 西川龍三. 建設業法 と 標準契約約款』 1版, 土木學會, 昭46. 9. 發行(1971年)

18) "FIDIC制定 技術用役에 關한 最新標準約款IGRA", 金詢根(要參照 P46-67, Vol. 17, No. 2, June, 1984. 技術士會誌)

19) 解放前 日本에서는 技師, 技手(기대)의 名稱制度가 있었다.

『여하튼 現場의 인스펙타는 Spec.에 쓰여있는 것을 얼마든지 現實과 符合되지 않아도 施行에 옮기도록 強迫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檢査者를 指稱하는 것이다.

『檢査者：當該工事に 關한 檢査者는 엔지니어 代理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義務는 各種 分野擔當의 엔지니어에 對하여 示方書上에서의 逸脫하는 어떠한 것에 對하여도 그것을 報告하는 것이고 또 必要한 境遇에는 擔當(分野) 엔지니어가 問題의 工事に 關해서 그 見解를 口述할 수 있을 때까지 當該工事を 中止시켜두는 命을 내리는데 있는 것이다.』

한편 英美流(方式)의 契約約款上的의 엔지니어는 職名上 日本 國內의 컨설턴트의 차프엔지니어(chief engineer)나 公社公園의 技師長에 該當하는 것이나, 現場에는 駐在(常時)엔지니어²⁰⁾ (Resident Engineer)를 配置해서 엔지니어를 代表케 하고 있다. 英美에서는 建設工事상의 엔지니어와 建築士(Architect)의 法的身分은 다음과 같이 一般條件書에 規定되어 있는 것이 普通이다.

『엔지니어의 身分：엔지니어는 當該工事的 全般的인 監督權과 指示權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는 當該契約의 適切한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 언제든지 當該工事を 中止시키는 權限을 갖는다. 그는 또 當該契約에 合致되어 있지 않는 工事와 資材를 모두 拒否할 權限, 그리고 그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當該工事的 어떠한 部分에 對해서도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엔지니어는 모든 境遇에 있어서 數種類의 工事 或은 資材의 金額, 數量思想과 同一한 것이다. 단지 雇用主와 使用人의 選擇上 權利가 있을 뿐이다. (雇用主와 使用人이라는 말이 아니고 雇用者와 或은 級別을 決定하는 것으로 한

다.)

建築士의 身分：建築士는 當該工事的 全般的인 監督權과 指示權을 갖는 것으로 한다.

그는 契約書類上에 있어서 規定되어 있는 範圍內에서만 發注者의 代理人이고 그리고 特別한 境遇에는 그가 그렇게 行動하는 것을 發注者에 依해 認可되어 지거나 如斯한 境遇에는 要請에 따라서 都給業者에게 代理權委任狀을 表示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契約의 適切한 履行을 確保하기 爲해 그것이 必要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當該工事を 中止시킬 權限을 갖는다.

建築士는 第1義務的 事項으로는 契約上 條件의 解釋者일 것이고 또 履行上 決定者이므로 그는 發注者에게나 都給業者에게나 贊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나, 兩者에 依한 그 充實한 履行을 強制케하기 爲하여 當該契約下에서의 權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建築士의 雇用終結時에는 發注者는 別途의 有能한 實績있는 建築士를 任命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그 建築士에 對하여 都給業者도 別段의 異意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建築士에 對하여 當該契約下에서의 地位는 前任者인 建築士의 그것과 같이 한다. 그러한 任命에 關聯된 어떠한 紛爭(Dispute)²¹⁾도 仲裁(Arbitration)에 따르는 것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엔지니어 或은 建築士의 役割과 身分은 인스펙타(Inspector) 그 自體와 比較해서 格調 높은 差가 있는 것을 明確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建築士의 身分規定에서 알 수 있듯이 專門職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²²⁾의 地位는 發注者와 都給者間에 判然하게 確立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の 建設工事標準契約約款에도 이와같은

20) Resident Representative(現地駐在代表)같은 말도 英, 美國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

21) 要參照 한個의 例：FIDIC(國際標準) 土木工事契約條件의 第67條 紛爭의 解釋(Settlement of Disputes)(附錄-8)

22) 英國에서는 Chartered Engineer라고 부른다.

『技師』의 位置를 確保하는 것이 發注者(甲)와 都給者(乙)가 公正하게 公平한 權利行使와 義務의 履行을 爲해 希望的 事項으로서 日本 敗戰 7年前인 1938年(昭和13年)에 土木學會契約書調查委員會 委員 近藤鐵太郎氏의 經過說明이 있었던 것으로서 『...技師의 地位를 確保해야 할 理想案을 繼續 研究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提示된바 있으나..., 지금도 從來의 慣例가 50餘年間 소처럼 끌려다니는 것과 같은 技術者의 身世가 繼續되고 있다.』(韓國도 거의 같은 立場에 놓여 있다)

英美國에서는 엔지니어와 發注者間의 信託關係에 있는 것을 法的으로 授信關係(fiduciary relation)라고 한다.

이것은 本人과 代理人, 辯護士와 依頼人, 受託者와 受益者等 信任을 授受하는 關係에 있어서 受信者가 이것을 濫用해서 스스로 受益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해 法이 最高의 善意義務를 賦課하는 特殊한 信任關係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가 倫理에 嚴正해야 하는 것은 (業務上) 當然한 것이다.

授信關係는 普通の 信任關係(confidential relation)·例컨데 醫師와 患者, 僧侶와 信者와 같은 關係·보다도 一段 格上된 關係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英美에서는 發注者와 엔지니어의 關係는 依頼人과 辯護士와의 關係와 同一한 것이고 그러므로 發注者는 依頼人(client)이라고 呼稱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는 依頼人 本人의 代理人(agent)²³⁾이나 美國에서는 代理人法²⁴⁾에 依據하여 다음과 같은 責任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엔지니어는 그 專門職地位에 있는 者가 普

通으로 所有하고 있는 技倆, 學識, 그리고 經驗을 適切하게 所有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2) 엔지니어는 依頼人 本人의 合法的指示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3) 엔지니어는 當然히 通常的인 注意力, 勤勉性, 技倆(能力)과 知識을 使用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는 自己自身이 發揮할 수 있는 最良의 判斷力을 行使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엔지니어는 正直하지 않으면 안된다.

以上の 責任 몇個所는 一般的으로 學會나 엔지니어團體 및 協會, 建設業者協會의 倫理 規定이나 行動基準²⁵⁾에도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當然한 것이고 法的으로는 當然한 것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

『代理人의 行動과 仲裁人의 役割』로 簡單히 表現 할 수 있다. 參考로 詳述하면 다음과 같은 半裁判官으로서 當該建設工事中 役割하게 된다.

엔지니어는 發注者의 代理人으로서의 行爲를 하는 것 外에 發注者와 都給者間에서 仲裁人(arbiter)의 役割도 遂行 한다.

當該建設工事に 있어서 엔지니어가 自己의 判斷으로 工事나 資材에 缺陷을 發掘했을 境遇에는 이것을 拒否하거나 非難하는 權限을 附與받고 있는 以外에 發注者와 都給者間의 紛爭은 이것을 仲裁할 權限이 附與되어 있다는 것이다.

發注者 或은 都給者가 엔지니어의 仲裁判斷²⁶⁾에 不服할 境遇에는 法廷(司法3審制)에 끌고 들어갈 수가 있으나 엔지니어의 仲裁判斷은 當該訴訟의 停止條件인 것이 되므로 訴訟에 앞서서 엔지니어의 仲裁判斷이 明示되어 있지 않

23) 英國에서는 都給者를 現場에서 代理하는 것이 現場代理人을 Agent라고 하니 混同해서는 안된다.

24) 韓國에는 獨立된 代理人法이 없다. 例컨데 公證代理人法 같은 것은 있다.

25) 別添된 附錄-3의 『科學技術人의 信條』와 『技術士倫理要綱』과 비슷한 것이다.

26) 仲裁에서는 判斷(Determination)이지 判決(Judgement)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SGK)

으면 안된다.

이 仲裁判斷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엔지니어는 發注者쪽이나 都給者쪽에도 짝을 지어서는 안된다. 이 엔지니어의 役割은 司法的 役割 或은 裁判官的 役割(judicial function)이라 하고 있고, 엔지니어는 裁判官과 같은 公正과 公平(justice and equity)을 趣旨로서 行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6. ぎじゅつし(Gijutsushi)라고 하는 日本 最新技術士法の 줄거리

日本技術士法은 最初로 1957年에 制定公布되었고 1967年에 第2次 改正을 거쳐서 1983年에 全面改正하여 全文63條와 附則 15條로 構成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 法の 主要特徵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1) 技術士補制度를 新設하였다.
- 2) 技術士試驗과 指定試驗機關 等に 關한 法條文이 무려 29個 條項(全 條文의 約 47%에 該當한다)에 이르고 있어서 技術士試驗의 嚴正, 公平 等を 法條文化한 듯한 印象이 짙다.
- 3) 技術士等の 業務條項은 있으나 技術士의 活用施策上의 條項이 없는 것은 日本의 法的·社會的基盤이 先進國化로 成熟되어 있어서 關係 各部處가 제각기 알아서 行政法規로 活用施策을 講究하고 있기 때문이다. 例컨데 日本의 建設省은 技術士의 活用義務規制가 있어왔고 또 日本國鐵이 解體되어 株式會社로 轉換함에 따라 여기서 發注하는 모든 事業參與에는 技術士活用の 義務規定이 “運送事業法(日本)”에 條文化된 實情이고, 農林省도 技術士活用義務化의 規制化를 現在 企圖中²⁷⁾에 있다.

이와같이 漸次 日本도 技術士活用義務施策化 傾向에 가고 있다.

- 4) 母法은 全文63條에 이르며, 同施行令은 不過 4條와 附則 한줄(行目)로 構成되어 行政當局의 橫暴를 事前防止하고 우리 같이 거의 每年 施行令을 改正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先進國型立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아직도 法的授任事項이 條文化 되어 있지 않고 日本 敗戰前 부터 많은 研究를 해왔으나 封建的인 慣行이 持續되어 오고 있다.
- 6) 技術士法施行規則이 全文23條와 附則 4條로 構成되어 部令으로 法規化의 完璧을 期하는 印象이 짙다.
- 7) 日本技術士法은 西歐化의 立法模倣은 아직도 되지 못하고 日本型技術士 卽 ぎじゅつし(Gijutsushi)에 머물고 있고, 經濟大國에 걸맞지 않은 立法狀態 이다.

7. (新)技術士法立法案의 趣旨와 骨子

到來할 未來는 技術主導社會, 後期産業社會 또는 情報化시스템社會 等으로 發展 할 것이라고 展望되고 있으며 이러한 展望의 基本的이고 共通的인 基底는 科學技術이 社會發展의 牽引車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豫見되는 時代的 潮流와 그 要請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先進社會를 具現하기 爲하여 政府에서는 2,000年代를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을 樹立하고 科學技術立國을 爲한 世界 第10位圈 技術先進國立國目標를 設定하였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하여는 무엇 보다도 科學技術革新을 이룩 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關聯制度를 確立하여 優秀 科學技術人力을 養成·確保하고 그것을 社會的 優待속에서 活用하여

27) 91年度 서울서 開催된 韓日技術士合同심포지움에서 日本側의 公式發言에 根據함

야 하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미 改正憲法(第8次)에는 卽, 第127條 第1項²⁸⁾에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通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 趣旨를 要約하여 알기 쉽게 적으면 다음과 같다.

〈立法趣旨〉(要約)

1) 西歐 및 主要 先進國과 같이 技術士制度를 統合單一化하여 獨立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技術士(單一統合된)專門法²⁹⁾을 制定하여 科學技術處가 1981年度以前 過去 처럼 主管함으로써 能動的이고 政府組織機能上 效率的·合憲的인 政策을 樹立·遂行할 수 있고, 技術士制度를 活性化시켜 技術士에 依한 產

業技術發展에 寄與度를 提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爲하여 새로이 立案制定될려고 하는 技術士(專門)法은 技術士의 定義, 資格取得, 登錄(資格 및 業務上의), 職務, 管理, 仲裁機構, 會員, 共濟事業 및 技術士會 等の 事務를 總網羅한 完全한 單一法이 되는데 있다.

그러나 仲裁機構와 技術士會員의 共濟事業 등이 原案에서 削除된 것은 매우 短見으로서 韓國社會의 發展狀況을 잘 모르고 法的·社會的基盤의 造成템포를 늦추는 先進化·國際化·開放化에 對備하기는 커녕 逆行하는 일이라 指摘된다.

3) 立法案의 壽命이 짧아지는 것은 不可避한

表-6. (新)技術士法의 立法上 變化된(節次上) 法案對比表(SGK)

法案別 內 容	技術士會案(國家技術士法)	科技處立法予告案	法制處 接受案	備 考
全 文	第60條	第20條	第18條	將次の 研究對象 國家技術資格法의 適用 削除되어도 商法 適用되다 復活되다 復活되다 削除되다 復活되다
附 則	第6條	第2條	第2條	
主要構成	① 技術士補制度 新設	削除되다		
	② 技術士業務의 定義속에 “技術仲裁”가 包含되다			
	③ 資格試驗 條文化 되다	削除되다		
	④ 技術士事務所 開發되다			
	⑤ 表示行爲 條文化되다			
	⑥ 技術法人化*	削除되다		
	⑦ 技術士管理委員會			
	⑧ 技術士會設立 法定根據			
	⑨ 共濟事業團體		削除되다	
	⑩ 技術仲裁團體	削除되다		
⑪ 技術振興基金				
		(第9條)設計圖書의 申告等	削除되다	

〈註記〉※ 法務法人, 會計法人, 醫療法人, 福祉事業法人, 關稅士法人, 學校法人等 特定法人化時代임을 알아야 한다.

28) 위 條項에 違背되는 事例의 하나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의 立法豫告”이다.

29)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것을 意味한다.

現實로 豫見되나 最小 30年 卽, 한 世代라도 維持할 수 없는 境遇에는 不平不滿을 갖지 않겠지만 지금 現時點의 法律的 基本常識에서 相馳되는 法案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表-6은 技術士法案의 行政節次上的 變遷을 적은 것이다.

技術士(會)가 主張하는 위 題目에 適한 3個 實定法上的 違憲條文을 條項別로 早見表로 作成한 것이 表-7과 같다.

國家基本法도 제대로 體得치 못하는 境遇가 많다는 事例로서 違憲判決이 續出하는 嚴然한 現實을 直視하여야 할 것이다.

8. 現行實定法인 技術用役育成法과 建設 技術管理法 및 國家技術資格法 等の 問題點

表-7. (技術士會가 主張하는) 3個 實定法の 違憲條項 早見表(SGK)

法別(所管部處) 違憲條項	國家技術資格法*(勞動部) (1973. 12. 31. 制定公布)	技術用役育成法(科技處) (1973. 2. 5. 制定公布)	建設技術管理法(建設部) (1978. 10. 28. 制定公布)	備 考
第1條(目的)	『이 法은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法壽命이 다된 表現이므로 改正되거나 다른 法的措置가 必要하다.		『-建設工事施工의 適正을 期하여-』 ★目的과 法內容이 相馳되는 곳이 많이 있다.	
第2條(定義)	『①-技術分野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士·機能長 等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 ★技術士의 法定上的 定義가 없다.	『第2條(定義)의 第2項: 用役業이라함은 第1號의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營業稅法(1967. 11. 29. 法律第1965號) 第1條 ②項에 依據한 同法施行令 第2條(營業 아닌 事業의 範圍)라, 마號에 違背되어 公연히 營業稅納付를 自招케하는 法條文이 되었다.	『第2條(定義)의 3項 “建設技術用役-建設工事의 計劃·調査·設計-』 ★이 法의 目的과 相馳되고 또 法內容에 있어서도 關係事項의 法條文이 未洽하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 第2條 第3項 “建設技術用役”이라함은 “建設技術管理用役”이라 改正되어야 하고, 定義中에 “調査·設計”라는 말은 削除되어야 한다.	이 法에서는 建設技術管理者도 法定 條文化 하여야 한다.

※이 法 名稱은 「國家技術 및 技能資格法」으로 改稱되어야 法條文과 一致한다(SGK)

★符號는 註釋部分 表示임

法別(所管部處) 違憲條項	國家技術資格法*(勞動部) (1973. 12. 31. 制定公布)	技術用役育成法(科技處) (1973. 2. 5. 制定公布)	建設技術管理法(建設部) (1978. 10. 28. 制定公布)	備 考
制 5條(類似檢定の禁止)	★ 지금까지 本法 所管部인 勞動部가 認定技術士·高級技術者·經歷者란 類似檢定을 하고 있는 部處에 對한 行政措置를 그 간 한바없다.	★ 技術用役育成法은 技術資格을 法定化할 수 없는 法인데도 不拘하고, 그간 同法施行令 附則 第2條(認定技術士)(1977. 7. 16. 令第8632號)를 始作으로 繼續해오다가 同令別表-4의 備考欄 속에 高級技術者の 定義가 있어서 이것은 母法의 根據 없이 行政當局이 立法權을 行使한 事例의 하나가 된다. ★ 技術用役育成法 第3條(登錄) “①用役業을 營爲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의 種類로 科學技術處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에 根據하여 用役業을 登錄하기 爲해 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를 使用하여 立法權을 超越한 資格定義를 條文化, 그것도 附表備考欄에서 規定짓는다는 것은 嚴然한 違憲임을 主張하는 바이다. 特히 強調하고자하는 것은 高級技術者の 檢定(認定檢査)을 할수 있는 法的 根據를 同施行令別表-4備考 2項에 依據하여 行政告示인 科技處告示 第88-12號로 “高級技術者の 經歷審査基準”을 定하여 1985年 2月 27日에 從前의 科學技術處告示 第84-4號를 改正告示한바 있다. 國家技術資格法 第5條에는 어떠한 形態이든 法令에 依하지 않고는 類似檢定을 할	★ 「-5項 “建設技術者”의 定義는 建設業法 第2條 9項과 같고 同施行令 第3條(建設技術者の 種類)-別表-2와도 相馳된다. 『이 法施行令 第4條의 別表-1 要參照』 ★ 웃기는 事例로서 建設部의 監理專門會社 登錄申請公告(建設部公告 第136號, 1989. 10. 25)에 “高級技術者”라는 非法定用語를 採用하고 있다. 또 同施行令 第4條와 關聯된 別表 1 그리고 別表-3 備考欄에는 ①高級技術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나 自然界 博士學位 所持者, 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附表-4와 거의 같다)	

法別(所管部處) 違憲條項	國家技術資格法*(勞動部) (1973. 12. 31. 制定公布)	技術用役育成法(科技處) (1973. 2. 5. 制定公布)	建設技術管理法(建設部) (1978. 10. 28. 制定公布)	備 考
		수 없음에도不拘하고 이와 같은 行政告示로 違憲하면서 까지 高級技術者制度를 고집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第10條(技術資格取得者에 對한 優待)	★優待는 커녕 薄待를 받은 事例가 많다.	★電氣通信技術士分野의 用役業 登錄에는 非法定技術人力인 高級技術者의 優待活用으로 同技術士는 甚한 薄待를 받고 있다.		憲法第22條 第②項 「科學技術者의 權利는 法律로서 保護한다.」
第12條(技術資格의 取消等)	★別添 表-8과 같이 技術士만이 資格取消가 되는 法令이 있어서 完全히 衡平의 原則을 벗어난 立法이다.			憲法 第11條①項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特記事項		이 法은 全文 第17條와 附則으로 構成된 것이고 1976. 12. 31. 廢法되었던 舊技術士가 實存함에도不拘하고 關聯된 先行法의 하나인 技術士의 活用(第23條)을 爲한 法條文上에 “技術士”란 말이 完全히 引用되지 않는다.	★第15條(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의 法條文은 有名無實하고 別表-9와 같은 情報化施工시스템에 依한 施工管理를 하여야 하고, 政府의 第2次 行政電算網計劃에도 建設部는 빠져있다.(別表-10 要參照) ★兼職禁止條項이 없다. ★技術仲裁와 施工監理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데도不拘하고 法條文化가 되어있지 않다. ★이 法改正試案(建設部, 文書番號: 技專 30720-153號, 1992. 3. 21) 指摘事項으로서 새로 插入되는 用語 “安全診斷”(法第2條 第3項中)에 關하여 建設工事의 情報化施工 傾向을 모르는 表現이다. 즉, “情報化施工”으로 代替되어야 한다.(人力施工→機械化施工→情報化施工)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關한 法律(1986. 5. 12. 法律第3848號. 要參照)

(註記) 美國 New Jersey 州의 技術士法 第45:841條에는 公共契約에는 技術士活用義務條項이 있다.

表-8. 現行法上の資格 또는 免許取消條項 對比表(SGK)

順序	關聯法名稱	關 聯 條 項	細 部 條 項	資格取消與否
0	(舊)技術士法	第 6條(資格停止) 제 10條(登錄의 取消)	一定期間 資格停止 登錄取消	無
1	建築士法	第11條(免許의 取消) 제 29條(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 第39~40條(罰則)	免許取消 事務所登錄取消 事業停止(1年 以內 懲役 또는 罰金)	無
2	辯護士法	第13條(登錄取消) 第14條(登錄取消命令) 第15條(事業停止命令) 第78~79條(罰則)	登錄取消 事業停止 懲役 또는 罰金	無
3	辨理士法	第6條(辨理士懲戒委員會)	辨理士會則違反者 懲戒	無
4	藥師法	第71條(藥師免許의 取消) 第74條(罰則)	免許取消 懲役 또는 罰金	有(免許取消)
5	醫療法	第51條(開設許可의 取消) 第52條(免許의 取消 및 再交付) 第53條(資格停止 等) 第66~69條(罰則)	醫療業의 取消 免許取消 및 再交付 資格停止(一定期間) 懲役 또는 罰金	有(免許取消)
6	公認勞務士法	第21條(資格의 停止處分) 第28條(罰則)	資格停止(3年以下) 懲役 또는 罰金	無
7	司法書士法	第18條(認可取消) 第20條(懲戒處分)	認可取消 事業停止(1年以下)	無
8	稅務士法	第17條(登錄取消 및 停職命令) 第22~24條(罰則)	登錄取消 및 停職 懲役 또는 罰金	無
9	行政書士法	第 8條(許可의 取消) 第 9條(事業停止命令) 第26~27條(罰則)	業務停止(3個月 以內) 懲役 또는 罰金	無
10	國家技術資格法	第12條(技術資格의 取消等) 第26~27條(罰則)	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停止 懲役 또는 罰金	有(資格取消)
11	公認會計士法	第16條(懲戒) 第17~20條(罰則)	登錄取消 또는 職務停止(2年間) 懲役禁錮(2年以下) 또는 資格停止(5年以下)	無
12	國土利用管理法(土地評價士)	第29條의 2(土地評價士의 免許等) 第31條의 2, 第32~35條(罰則)	懲役(2年以下) 또는 罰金(500萬원 以下)	無
13	海難審判法(海技士)	第6條(懲戒의 種類와 情狀參酌)	免許의 取消, 業務停止 譴責	有(免許取消)
14	導船法(導船士)	第34條(免許의 取消等)	導船安全審議會의 議決을 要함	有(免許取消)
15	中小企業振興法(指導士)	第27條(指導士 資格 및 基準) 施行令 第31條(指導士의 登錄取消)	機密漏泄時, 不正한 行爲時	無

〈註記〉 紙面上 資格取消事例은 적지 않기로 하였다.

附錄-1. 立法豫告案

〈省 略〉

附錄-2. 技術士法立法과 關聯된 主要實定法 目錄

- 1) 日本技術士法(新法)(1957年 制定, 1983年 3次改正)
- 2) 舊技術士法(1963年 制定, 1976年 廢止)
- 3) 建設共濟組合法(1963年 制定)
- 4) 建築士法(1963年 制定)
- 5) 公認會計士法(1966年 制定)
- 6) 仲裁法(1966年 制定)
- 7) 中小企業基本法(1966年 制定)
- 8) 科學技術振興法(1967年 制定)
- 9) 海難審判法(1971年 制定)
- 10) 相互信用金庫法(1972年 制定)
- 11) 國家技術資格法(1973年 制定)
- 12) 技術用役育成法(1973年 制定)
- 13) 醫療法(1973年 制定)
- 14)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法(1981年 制定)
- 15) 電氣工事共濟組合法(1982年 制定)
- 16) 辯護士法(1982年 制定)
- 17) 軍人共濟組合法(1983年 制定)
- 18) 其他 關聯實定法 一式

附錄-3. 科學技術人의 信條와 技術士倫理要望

〈省 略〉

附錄 4-1.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別表-1 『建設技術者の範圍』(第4條 關聯)

種類 및 等級 技術分野	技 術 士	技士1級	技士2級
土 木	土質 및 基礎, 構造, 港灣 및 海岸, 道路 및 空港, 鐵道, 水資源, 에너지土木, 上下水道, 灌溉排水 및 農地造成, 施工	土木, 土木材料 試驗	土木, 土木材料 試驗
建 築	建築構造, 建築機械設備, 建築電氣設備, 建築施工	建 築	建 築
機 械	建設機械, 冷暖房 및 冷凍機械	建設機械, 空氣調和 및 冷凍機械	建設機械, 空氣調和 및 冷凍機械
國土開發	地域 및 都市計劃, 造景, 測地	地域 및 都市計劃, 造景, 測地	造景, 測地
安全管理 交 通	建設安全 交 通	建設安全 交 通	建設安全

〈註記〉別表-1 에는 高級技術者와 技術者라는 말이 없다(SGK)

附錄 4-2.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別表-3 『監理專門會社 登錄基準』(第 54 條 關聯)

種 類	技 術 人 力	資本金	施 設	裝 備	備 考
施 工 監 理 專 門 會 社	土	1. 別表 1의 土木技術士로서 施 工을 除外한 技術士中 2個專 門分野 技術士 3人 以上 및 土木施工技術士 1人 以上을 包含한 高級技術者 5人 以上 2. 別表 1의 技士 1級 10人 以 上을 包含한 技術者 20人 以 上	資本金 2億원 以上	事務室(專用面 積) 100제곱미 터 以上	建設部令 이 定하 는 電子 計算器, 測量機 械, 其他 檢事試驗 裝備 等
	木 建 築	1. 建築士 3人 以上 및 建築施 工技術士 1人 以上을 包含한 高級技術者 5人 以上 2. 別表 1의 技士 1級 5人 以 上을 包含한 技術者 10人 以 上	資本金 1億원 以上	事務室(專用面 積) 100제곱미 터 以上	
全 面 責 任 監 理 專 門 會 社	土	1. 別表 1의 土木技術士로서 施 工을 除外한 技術士中 6個專 門分野 技術士 10人 以上 및 土木施工技術士 4인 以上을 包含한 高級技術者 30人 以 上 2. 別表 1의 技士 1級 50人 以 上을 包含한 技術者 90人 理 想	資本金 10億원 以上	事務室(專用面 積) 400제곱미 터 以上	
	木 建 築	1. 建築士 5人 以上 및 建築施 工技術士 3人 以上을 包含한 高級技術者 13人 以上 2. 別表 1의 技士 1級 15人 以 上을 包含한 技術者 30人 以 上	資本金 5億원 以上	事務室(專用面 積) 200제곱미 터 以上	

〈備 考〉

1. 高級技術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技術士 또는 建築士나 自然界 博士學位 所持者, 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이
에 準하는 學校에서 建設技術에 關聯된 學科를 專攻하고 卒業한 者로서 當該 專門分野에서 10年 以上 勤務한 者로
함.
2. 技術者는 別表 1에 依한 技士 1級이나 教育法에 依한 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學校에서 建設에 關聯된 學科를 專攻
하고 卒業한 者도 이에 準한 技術者로 볼 수 있음.
3. 技術用役育成法에 依한 技術用役業者 또는 建築士法에 依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監理專門會社로 登錄을 하는 境
遇에는 이미 保有하고 있는 技術人力·資本金·施設·裝備 等은 이 基準에 包含할 수 있음.

〈註 記〉

違憲對象用語(母法の 根據없이): (1)高級技術者, (2)技術者

附錄 4-3. 建設部公告 第 136 號

건설부공고 제 136 호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년 10월 25일

건 설 부 장 관

1.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신청자격

종 류	신 청 자 격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신청마감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2. 신청서접수기간: 1989년 11월 25일~1989년 11월 30일(6일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의 교부: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진흥담당관실(Tel. 503-7333)

나. 신청서의 접수: 건설부 기술관리실 기술진흥담당관실
(과천 정부종합청사 4동 330호실)

다. 접 수 시 간: 근무시간내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4.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구비서류

- ① 대표자·임원 및 보유기술자의 이력서·신원증명서
- ② 대표자·보유기술자의 기술자격현황 및 자격증사본(기술자격증이 없는 고급기술자와 기술자는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소정서식))
- ③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④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명하는 자료
- ⑤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등)
- ⑥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⑦ 건축부문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당해 건축사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위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공고일 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함.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부 기술진흥담당관실(Tel. 503-7333, 500-2859, 2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附錄-5. 外國技術士制度에 關한 資料 目錄

1.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State of California D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 ROYALS CHARTER, BY-LAWS, REGUSATION AND RULES(1975,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3. SUMMERY OF THE REQUIREMENTS FOR ENGINEERING REGISTRATION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4. ENGINEERS ACT, 1979(RS CHAPTER 109)
5. PROFESSIONAL ENGINEER(Wisconsin)
6. BORAD OF ARCHITECTURE, ENGINEERING, LAND SURVEY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State of Minnesota)
7. THE BC PROFESSIONAL ENGINEER(1983)
8. 1982 DIRECTORY OF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OF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9. INTERNATIONAL MODEL FORM OF AGREEMENT BETWEEN CLIENT & CONSULTING ENGINEER
10. SALARY SCHEDULE FOR PROFESSIONAL ENGINEERS 1981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od British Columbia)
11. 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1985 sATE OF cONNECTLOUT)
12. ENGINEERING LAW OF NEW JERSEY, REVISED STATUTES--TITLE 45:8*(기술사활용 의무화)
13. 日本技術士會 30年史(日本技術士會 發刊)
14. 『建設컨선탄트나 歐美實態調查 總括報告書』(社團法人 建設컨선탄트協會, 1982年 3月 發行)
15. 『日本技術士制度 / 國家試驗. 字格의 案內』(社團法人 日本技術士會, 1990年 2月 發行)

附錄-6. 勞動部의 回信公文寫本(國家技術資格法에는 高級技術者가 없다는 要旨)

〈省 略〉

附錄-7. 行政訴訟資料(電氣通信技術士)

1989. 12. 23. 法院接受

1989. 12. 28. 科技處 到着

事 件 : 89구16579 科學技術處 告示處分 無效確認 請求의 訴

1. 訴訟目的

不當한 科技處告示로 因하여 用役市場이 좁은(年平均 150億) 電氣通信用役市場에 技術士를 高級技術者(經歷者)로 代替함으로 因해 過多한 形式的 業體의 亂立을 防止하고 合憲的이고 健全한 電氣通信技術用役을 發展시키기 爲함.

2. 訴訟要旨

- 1)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等を 無視한 不當한 長官告示를 撤回하여 用役業에 進出할 技術士들이 보다 많이 進出하여 技術士活用促進 (當時 技術士 進出 約 50% 였음)
- 2) 施行令 附則 第3條에 高級技術者로 代替할 時는 主務部(遞信部)長官이 먼저 理由를 들어 高級技術者 代替를 要請한 後 科技處長官이 措置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科技處長官이 主務部長官의 要求없이 告示를 發한 節次上의 瑕疵를 指摘하여 無效主張 等等

3. 結 果

- 1) 10餘 차례 高等法院에서 判斷審議 ---- 行政訴訟의 性質上 長期化됨
- 2) 明白한 瑕疵를 指摘하였는데도 科技處가 長期化 되도록 誘導하고 指摘당한 部分은 施行令을 改正함(1990. 12. 31.)
- 3) 改正法 第5條 第2項에(技術人力의 代替)
---- 主務部長官의 要求에 依해 ---- 를 削除하고, ---- 高級技術者로 代替할 수 있는 範圍를 科技處長官이 單獨으로 代替하여 告示할 수 있도록 規程을 改正함.
- 4) 附則 1에 依해 問題가 된 告示를 廢止함으로서 科技處의 敗訴를 두려워하여 行政訴訟의 實益을 抹殺시켰음
- 5) 訴訟의 目的인 告示가 廢止됨으로서 訴訟의 目標가 없어져 棄却됨이 明確하게 되었음
- 6) 設사, 訴訟하여도 法改正으로 實益이 없으므로 通信分會의 認定하에 技術士法에 置重하기 爲해 1991年 4月 取下하였음.

附錄-8-A. FIDIC의 土木工事 一般條件書

SETTLEMENT OF DISPUTES

67. IF any dispute or difference of any kind whatsoever shall aris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or the Engineer and the Contractor in connection with, or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the execution of the Works, whether during the progress of the Works or after their completion and whether before or after the termination, abandonment or breach of the Contract, it shall, in the first place, be referred to and settled by the Engineer who shall, within a period of ninety days after being requested by either party to do so, give written notice of his decision to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Subject to arbitration, as hereinafter provided, such decision in respect of every matter so referre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and shall forthwith be given effect to by the Employer and by the Contractor, who shall proceed with the execution of the Works with all due diligence whether he or the Employer requires arbitration, as hereinafter provided, or not. If the Engineer has given written notice of his decision to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and no claim to arbitration has been communicated to him by either the Employer or the Contractor within a period of ninety days from receipt of such notice, the said decision shall remain final and binding upo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If the Engineer shall fail to give notice of his decision, as aforesaid, within a period of ninety days after being requested as aforesaid, or if either the Employer or the Contractor be dissatisfied with any such decision, then and in any such case either the Employer or the Contractor may within ninety days after receiving notice of such decision, or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rst-named period of ninety days, as the case may be, require that the matter or matters in dispute be referred to arbitration as hereinafter provided. All disputes or differences in respect of which the decision, if any, of the Engineer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 as aforesaid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under such Rules. The said arbitrator/s shall have full power to open up, revise and review any decision, opinion, direction, certificate or valuation of the Engineer. Neither party shall be limited in the proceedings before such arbitrator/s to the evidence or arguments put before the Engineer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his said decision. No decision given by the Engineer in accordance with the foregoing provision shall disqualify him from being called as a witness and giving evidence before the arbitrator/s on any matter whatsoever relevant to the dispute or difference referred to the arbitrator/s as aforesaid. The reference to arbitration may proceed notwithstanding that the Works shall not then be or be alleged to be complete, provided always that the obligations of the Employer, the Engineer and the Contractor shall not be altered by reason of the arbitration being conducted during the progress of the Works.

附錄-8-B. 紛爭의 解決

67. 發注者나 工事監督과 施工者 사이에 本契約 또는 工事施工과 關聯하여 如何한 紛爭이나 異見이 發生할 境遇(工事進行途中 또는 完工後나 契約의 終結·廢棄·違反 前後 언제든지) 手先 工事監督에게 委任시켜 이를 解決하되 工事監督은 雙方의 어느 側으로 부터든지 要請을 받으면 이로 부터 90日 以內에 自己의 決定을 發注者와 施工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以下에 規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工事監督이 내리는 決定은 最終的인 것으로서 發注者와 施工者를 工事完成時까지 拘束力을 가지며, 以下에 規定하는 施工者나 發注者로 부터의 仲裁要請의 有無에 不問하고 施工者는 그 決定을 遵守하여 工事を 誠實하게 進行하여야 한다. 工事監督이 紛爭 또는 異見에 對한 決定을 發注者와 施工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 當事者들이 그것을 接受한 後 90日 以內에 兩者로 부터 모두 仲裁要請을 하겠다는 意思를 工事監督에게 通知하지 않았을 境遇 그 工事監督의 決定은 最終的인 것으로서 兩當事者에게 拘束力을 갖는다. 만일, 工事監督이 紛爭調整 要請書를 받고서도 90日 以內에 이에 對하여 決定을 내리지 못하였거나 또는 工事監督이 내린 決定에 對하여 當事者가 承服하지 않을 境遇 當事者는 工事監督의 決定通知書를 接受한 後 90日 以內에 또는 工事監督의 決定이 없을 때에는 紛爭調整申請書를 工事監督에게 提出한 날로 부터 90日의 期間이 滿了된 後 90日 以內에 紛爭事項을 아래에 規定하는 仲裁에 回附하여 主도록 要請하여야 한다. 工事監督의 決定이 前述한바와 같이 最終的인 拘束力을 가지지 못하게된 모든 紛爭 또는 異見은 國際商工會議所의 調整仲裁規則에 依據 選任된 1人 또는 그 以上の 仲裁人『團』에 依하여 最終的으로 解決한다. 仲裁人『團』은 工事監督의 決定事項, 意見指示事項, 證明事項 또는 評價事項等を 檢討하고 修正할 수 있는 全的인 權限을 保持하며, 兩 當事者들은 仲裁人『團』 主宰下의 本 節次 施行時 工事監督의 前記한 決定을 爲하여 그에게 提示하였던 證據物 및 主張等에는 拘束받지 않는다. 工事監督이 上記한 規定에 따라 내린 決定은 그로 하여금 仲裁人『團』앞에 證人으로서 出頭하여 同紛爭事件과 關係있는 如何한 事項에 對하여도 證言하고 證據를 提示할 수 있는 證人으로서의 資格을 制限하지 않는다. 仲裁人『團』은 發注者와 施工者로 부터 下記와 같은 書面同意가 提示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工事完了前 또는 當事者中 一方이 工事が 完成되었다고 主張하기 前에 仲裁調整에 들어가는는 아니된다.

1) 工事監督이 證明書의 發給을 遲延시키거나 或은 施工者에게 本書 第2部 第60條에 依據 支給되어야 할 留保金의 支給을 履行치 않으므로서, 或은 第63條 第1項에 規定된 工事監督의 證明書發給權限에 關聯하여 或은 本書 第71條에 關한 紛爭에 依하여 提起된 仲裁事件에 對하여 工事竣工前에 仲裁를 開始하여도 可하다는 뜻의 同意書

2) 本書 第48條에 依據한 竣工確認書의 發給이 仲裁業務 開始의 先行條件이 되지않는다는 內容의 同意書

附錄-9. 行政電算網(第1次 및 第2次) 資料

〈省 略〉